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중세분화)

7월부터 일반주거지역을 제1·2·3종으로 세분화해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를 종별로 각각 다른 제한을 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중 세분화 절차는 자치구별로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계획안을 늦어도 다음달까지 시에 요청하고,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이 때까지 결정되지 않은 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지정된다.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에 따라 세 가지로 세분화하기 위한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5월초 끝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도입과 취업알선 업무를 민간이 아닌 국가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제도. 정부는 지난 93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알선업자 등 민간에 의해 관리된 결과 송출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의 폐해를 양산해 결국 장기적 사회비용이 늘고 일부 기업이 연수생을 독점해 많은 중소기업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등의 문제를 낳았다고 판단, 기존 연수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지난 28일 결정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분은 '산업연수생'에서 '근로자'가 되며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3권도 보장되며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최저임금, 연월차 휴가, 퇴직금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이나 노사관계 악화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 점을 어떻게 정리할 지 주목된다.

◆ 이중과세방지협정(二重課稅防止協定)

기업이 외국에 진출해 소득을 얻었을 때 그에 대한 세금을 본국과 외국 중 어느 한 곳에서만 내거나 두나라에서 나눠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체결하는 협정. 이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기업에 대해 두나라 모두가 세금을 부과하는 중과과세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협정을 맺을 때는 국가간 세제 차이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하며 체결되면 조약과 같은 효력을 지녀 통상 국회비준이 필요하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이자배당소득세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때는 서로간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한다. 특히 다른 나라기업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국가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지난 21일 아이슬란드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2차협상을 마무리 지었다.